

2019년 7월 3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축산환경자원과 과장 박홍식(044-201-2351), 사무관 남기현(2352) / 제공일: 7월 30일(총 4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, 개선 추진

-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7.30. 국무회의 통과, 금주 중 대통령 재가 후 국회 제출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(개정이유)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'유기축산물'로 단일화하고, '무항생제축산물 인증'은 친환경 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 감축 추진

* 2017년 12월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「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」의 후속 조치

◆ (이관방향)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, 농약사용 등 항생제 사용 저감 취지와 관련이 적은 인증기준은 삭제 또는 보완

* 인증기준, 인증절차,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축산법 하위법령 개정 시 학계 등 전문가,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, 이하 농식품부)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30(화)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, 금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□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「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」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.

-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되었으나, 환경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
- 이에,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 「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」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‘유기축산물 인증’으로 단일화하고, ‘무항생제 축산물 인증’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

<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 개요>

- (도입배경)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,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자 2007년부터 도입
- (인증현황-‘18년말 현재) 5,421건, 6,014농가, 출하량 915톤
 - * 축종별 인증농가수 : 소고기 3,528호, 돼지고기 795호, 닭고기 667호, 오리고기 429호, 우유 188호, 계란 469호, 기타 225호
 - * 유기축산물 인증제 : 2001년 도입, 2018년 현재 101호
- (주요 인증기준) 사료에 항생제·성장촉진제 등 첨가 금지, 질병취약시기 외 동물용의약품 사용 금지, 축사 및 사용자재 등에 합성농약 사용 금지, 축산물에서 합성농약은 불검출, 동물용의약품은 잔류허용기준의 1/10 초과 금지 등
- (인증관리) 농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인증기관(60개)

□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관련 조항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등 11개조를 신설하였다.

- 그리고, 수수료, 벌칙 등 기존 축산법 상의 5개조를 개정하고, 부칙에 시행일, 경과조치 및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 삭제 등을 규정하였다.

<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및 개정 조문>

- (신설:11개조) 제42조의2(인증근거), 제42조의3(인증절차), 제42조의4(유효기간), 제42조의5(준수사항), 제42조의6(표시방법), 제42조의7(인증취소), 제42조의8(인증기관), 제42조의9(부정행위), 제42조의10(사후관리), 제42조의11(승계), 제42조의12(준용-인증기관 운영)
- (개정:5개조) 제49조(수수료), 제5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, 제52조(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), 제53조(벌칙), 제56조(과태료)
- (부칙) 시행일, 경과조치, 다른 법률의 개정(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 축산물 용어 삭제) 등

○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, 인증절차, 표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 전문가,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.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,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 하게 되면,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과 같은 기준을 계속 유지하되, 농약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며,

○ 이를 통해, 소비자에게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명칭과 부합 하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, 축산농가에게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내 항생제 사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
참고

친환경농어업법과 축산법 개정안 조문 비교표

친환경농어업법	축산법
제19조(유기식품등의 인증)	제42조의2(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)
제20조(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)	제42조의3(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)
제21조(인증의 유효기간 등)	제42조의4(인증의 유효기간 등)
제22조(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)	제42조의5(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)
제23조(유기식품등의 표시 등)	제42조의6(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등)
제23조의2(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)	준용 X
제24조(인증의 취소 등)	제42조의7(인증의 취소 등)
제25조(동등성 인정)	준용 X
제26조(인증기관의 지정 등)	제42조의8(인증기관의 지정 등)
제26조의2(인증심사원)	준용 ○
제26조의3(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)	준용 ○
제26조의4(인증심사원의 교육)	준용 ○
제27조(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)	준용 ○
제28조(인증업무의 휴업·폐업)	준용 ○
제29조(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)	준용 ○
제30조(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)	제42조의9(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)
제31조(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)	제42조의10(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)
제32조(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)	준용 ○
제32조의2(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)	준용 ○
제33조(인증기관 등의 승계)	제42조의11(인증사업자 등의 승계)
제56조(수수료)	제49조(수수료)
제57조(청문 등)	준용 ○
제58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	제5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
제59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)	제52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
제60조(벌칙)	제53조(벌칙)
제62조(과태료)	제56조(과태료)

※ 제42조의12: 준용규정